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65 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 : 임오경 • 부승찬 • 박상혁

강유정 · 강선우 · 추미애

민병덕 · 한민수 · 이소영

김남희 · 김재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방재정법」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 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.

경마·경륜·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·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 되고 있는바, 경마·경륜·경정 등의 사업장(본장)과 장외발매소가 소 재한 시·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, 도박중독, 교육상 문제, 교통혼잡, 주차문제,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.

특히 경마·경륜·경정 등의 사업장(본장)이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 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 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, 각종 불법행위, 주차문제, 교육상 문제,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 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.

이에 경마·경륜·경정 등의 사업장(본장)이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(본장)이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시·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4항, 제29조의2제3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4항 중 "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(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)에서"를 "제43조각 호에 따라"로, "그 장외발매소가 있는"을 "그 경륜등의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"으로 한다.

제29조의2제3항 중 "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(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)에서"를 "제43조 각 호에 따라"로, "그 장외발매소가 있는"을 "그 경륜등의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레저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레저세분 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 ~	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 ~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시·도지사는 「지방세법」	4		
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(같	제43조 각 호에 따라		
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			
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			
매소는 제외한다)에서 발매한			
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			
표권, 승마투표권 등(이하 "승			
자투표권등"이라 한다)에 대하			
여 시・군에서 징수한 레저세			
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			
액을 <u>그 장외발매소가 있는</u> 시	그 경륜등의 사업장 및 장		
• 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	외발매소가 있는		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	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		
·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	③		
「지방세법」 <u>제43조제2호의</u>	<u>제43조 각 호에</u>		
장외발매소(같은 법 같은 조	따라		
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			
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			
<u>다)에서</u> 발매한 승자투표권등			
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			

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는 금액을 <u>그 장외발매소가 있</u> <u>는</u>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<u>및 장외발매소가 있는</u>-----한다.

-----그 경륜등의 사업장